

학교시설물(소방)안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교내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제3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총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 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② 총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총장은 제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

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총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총장은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 교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화기 단속 등)

실(室)이 벽·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 ① 방호원(공공기관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 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옥외·공중 집합장소 및 공중사용 시설의 화기 단속과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총장의 소방활동)

총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① 총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본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班)은 각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

도록 유도한다.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① 총장은 본교의 모든 교직원에게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당일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소방점검의 실시)

구 분	자체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주기	월1회 이상	연1회 이상
점검서식	소방시설외관점검표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
점검자	방화관리자 또는 업무대행자	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결과	자체 기록 보관(2년)	15일 이내 관한소방서 제출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확인사항

- ① 화재수신반 스위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② 경보상태 및 각 회로별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 ③ 발신기 외관 및 내부선로 상태를 확인한다.
- ④ 각 실의 화재감지기 동작상태 점검을 확인한다.
- ⑤ 스프링클러설비의 동작상태 점검을 확인한다.
- ⑥ 소화펌프의 성능시험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⑦ 소화수조의 유효수량 보유 및 저수위경보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 ⑧ 주변 장애물 적재 여부를 확인한다.

※ 소방시설이 작동 할 때 조치사항

- ① 각 실 화재감지기가 오동작 했을 경우
⇒ 화재수신반에서 주경종, 지구경종을 정지시킨 후 수신반에 표시된 지역으로 이동 하여 동작된 감지기를 분리한다.
- ② 화재 수신반 주경종 및 각층 지구경종이 동작했을 경우
⇒ 수신반에서 주경종, 지구경종을 정지시킨 후 해당 지역에서 화재발생유무 확인. 화재발생시 초기진화를 시도한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복구 스위치를 누른 후 경종버튼을 원상 복구한다.
- ③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비상방송이 동작했을 경우
⇒ 화재수신반에서 비상방송 스위치를 눌러서 방송을 정지시키거나, 비상방송 앰프 의 전원을 차단한다.
- ④ 소화펌프 동작 및 화재 수신반 펌프의 기동 확인 램프가 점등했을 경우
⇒ 수신반에서 펌프를 정지한 후 펌프 동작램프를 점검한다.
⇒ 수신반에 펌프 정지 버튼이 없는 경우 펌프의 전원을 차단한다.
- ⑤ 각층의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이 폐쇄되었을 경우
⇒ 수신반에 신호 입력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복구한다.
⇒ 폐쇄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폐쇄된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복구한다.
- ⑥ 피난구 유도등이 점등되었을 경우
⇒ 수신반에서 화재신호 입력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복구한다.
- ⑦ 스프링클러설비 사이렌이 동작하거나 헤드에서 물이 나올 경우
⇒ 수신반에서 사이렌 정지스위치를 눌러서 정지시킨다.
⇒ 물이 나오는 층으로 이동하여 알람밸브실(유수검지장치실)을 찾아 밸브를 잠근다.
- ⑧ 각 층의 소화전배관이 파손되어 물이 새는 경우
⇒ 소화펌프실로 신속히 이동한다. 소화펌프 토출측 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잠근다. 지하층 또는 1층 소화전 호스를 외부로 연결하여 배관 내 물을 배수시키고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보수한다.

부 칙

가)

나) 1.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의 일반 점검사항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종결	미비
▷ 교실에는 1개 이상, 복도에는 20m 이내에 1개 이상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게이지가 녹색범위에 있는지 확인한다.		
▷ 구내식당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 소화전함 호스의 노후 여부를 확인한다.		
▷ 소화전함내 호스가 2개 이상 비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화재발신기는 바닥으로부터 0.8m~1.5m사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소화펌프 운전스위치가 정상상태인지 확인한다.		
▷ 정전시 비상발전기의 자동동작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 화재수신반 스위치(주경종, 지구경종 동작)정상 상태를 확인한다.		
▷ 화재수신반이 설치된 곳은 항상 사람이 상주하는 곳인지 확인한다.		
▷ 각종 경보설비 동작상태 및 소화전 표시등 점등상태를 확인한다.		
▷ 각 실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노후 및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 피난계단 출입문의 계단상태 및 피난로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 피난경로 유도 및 피난구유도등의 점등상태를 확인한다.		
▷ 강의실마다 또는 층마다 대피경로에 대한 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한다.		
▷ 비상시 대피 훈련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전열기, 가스렌지 등과 가연물은 이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